##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45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 강득구·이상식·문정복

김준혁 • 민병덕 • 이학영

복기왕 • 윤종군 • 김주영

박홍배 • 이강일 • 권칠승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를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공급하고 있으나, 재생용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에 화학약품이 사용되므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는 재생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종이가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의 녹색제품 수요 확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에, 최근 급속히 진행 중인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제2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1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제
				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
				당하는 종이로 제작하여야 한
				<u>다</u> .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